

##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45
----------	-----

제출년월일 : 2008. 9.  
제출자 : 중구청장

###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도로명 사용 및 자료구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체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나.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5조)
- 마.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8조)
- 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및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8조)

### 3.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08. 6. 23 ~ 7. 14)

##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3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

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보행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6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이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 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 (법 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 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6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건물번호판 또는 도로명판 설치 완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 · 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 제4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8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울산광역시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도로 · 건축물 · 국토이용계획 · 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구청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중구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2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4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협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6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6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중구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광고사업신청서제출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중구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울산광역시중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울산광역시중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중구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제16조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8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9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장 울산광역시중구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중구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중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7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6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당해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기타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15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적합성	15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 근 거 법 규

### □ 도로명주소 등 표기애 관한 법률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 (도로명부여 등) ① 시장 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
3. 도로명의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
4. 건물번호의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
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대장의 작성 및 비치
6. 도로명판의 제작·설치
7.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8. 건물번호 부여신청 등
9. 기본도의 작성
10. 그 밖에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전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기본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인자 부담) 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새로운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허가 전에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시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지역에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도로명시설의 광고) ① 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②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제22조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

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안내 지도에 도로명안내지도 표기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등) ⑤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의 규격·색상·부착위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와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4.4>

제17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 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6조 (시·군·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안내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등 소속하에 시·군·구새주소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시·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4.4>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⑥ 시·군·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중앙위원회"는 "시·군·구위원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 등"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⑦ 시·군·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45)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9. 9(화)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2008. 9. 16(화)
- 라. 위원회 상정 : 2008. 9. 24(수)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임

### 4. 주요골자

- 가. 자체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나. 도시개발 사업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 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제15조)
- 마.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 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0조)
- 사. 울산광역시중구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28조)

## 5. 관련법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6.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최대림)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도로명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도로명 사용 및 자료구축 등과 새주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2006. 10. 4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4. 5일 시행되었고, 2007. 8.1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우리구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제정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